

# 2010 달라지는 양계정책 및 시행지침

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. 이 가운데 양계산업 관련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해본다.

##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

### 1. 목적

-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

### 2. 성과목표 및 지표

- '17년까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젖소 축종의 축사 총 5,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

구분	성과지표	2010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	'07	'08	'09		
양계	일당증체량(육계)	39.8	39.3	39.5	39.5	매년 1월중	일당 증체량(통계청 생산비 조사)

### 3. 사업대상자

- 육우, 양돈, 양계, 오리, 낙농 :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, 계열화 사업참여농가 및 전업농
  - \* 전업농 기준 : 육우 50두 이상, 양돈 1,000두 이상, 양계(닭) 30,000수 이상, 오리 5,000수 이상, 낙농(젖소) 50두 이상
  - \*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 제외
  - \* 종돈장 · 종계장 · 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

### 4. 지원자격 및 요건

- '06.1.1 이후 축산업(소 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, 오리사육업, 낙농업)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(축산업 등록 제 기준). 다만,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,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### 5. 지원대상

- 사업내용 :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
  - \*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
  - \*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
    - 양계 · 오리 : 축사(무창 또는 개방) 및 내부기자재(급이 · 급수 · 환기 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 · 습도 조절 장치, 계란 세척기 등), 계란 냉장보관창고, 폐사축 처리시설



## 6. 지원형태 및 사업량

○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

○ 보조 30%, 융자 50%(연리 3%, 3년거치 7년상환), 자담 20%

\*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

○ 사업기간 : 2년차 사업(1년차 50%, 2년차 50% 분할 지원)

**〈표1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(육계)**

평가항목	세부기준	배점	득점	비고
① 평시 사육수수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70,000수이상 사육</li> <li>• 60,000수이상~70,000수미만</li> <li>• 50,000수이상~60,000수미만</li> <li>• 40,000수이상~50,000수미만</li> <li>• 30,000수이상~40,000수미만</li> </ul>	40 30 20 15 10		* 증빙서류 제출 (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)  *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
② 추진기능성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부지가 확보되고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</li> <li>•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</li> <li>•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</li> <li>•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</li> </ul>	40 30 20 0		*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, 시 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
③ 대형닭 생산 실적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형닭 생산계약 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경우</li> <li>• 대형닭 생산계약을 체결한 경우</li> </ul>	40 20		* 계열주체와의 계약서 또는 출하증명서(출 하체증 등 명기)
④ 교육실적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축산관련 학교(농고, 전문대학, 대학(원)) 졸업자(또는 수료자)인 경우</li> <li>• 30일이상~</li> <li>• 20일이상~30일미만</li> <li>• 10일이상~20일미만</li> <li>• 5일이상~10일미만</li> <li>• 1일이상~5일미만</li> </ul>	30 25 20 15 10 5		*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 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, 축 산환경, 질병, 방역, 경영 등 사육과 관 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(이수 수료증 등)  *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
⑤ HACCP, 컨설팅 여부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HACCP 지정</li> <li>• HACCP 지정 신청</li> <li>•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</li> </ul>	20 10 5		* HACCP지정 및 신청은 (사)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 * 지정서,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
⑥ 가축공제 가입여부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축공제 가입증인 경우</li> <li>• 미가입</li> </ul>	20 0		*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
⑦ 수상경력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부(시·군·구, 시·도, 농림수산식품부 등) 또는 양 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 련된 표창, 포상 등을 받은 경우</li> </ul>	중앙부서 10 시도 9 시군구 8 협회·농협 7		*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*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, 포상 등을 제외  *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
계(200)				

주) 관련증빙서류 첨부, 미첨부시는 0점 처리

**〈가점〉 :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(인센티브) 부여**

평가항목	세부기준	배점	득점	비고
자조금 납입율 (7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납입율 100%</li> <li>• 납입율 80%이상 10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60%이상 8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40%이상 6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20%이상 4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10%이상 2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10%미만</li> <li>• 납입기준은 '09.6~'09.10월 도계분에 한함</li> </ul>	70 60 50 40 30 20 0		* 자조금 납입확인서를(양식 별표 1- 3-가) 도계장 및 시·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 * 납입율=(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 액/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)× 100%

〈표2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(산란계)

평가항목	세 부 기 준	배점	득점	비고
① 평시 사육수수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70,000수이상 사육</li> <li>• 60,000수이상~70,000수미만</li> <li>• 50,000수이상~60,000수미만</li> <li>• 40,000수이상~50,000수미만</li> <li>• 30,000수이상~40,000수미만</li> </ul>	40 30 20 15 1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증빙서류 제출 (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)</li> <li>* 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농장 사육수수만 해당</li> </ul>
② 추진가능성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부지가 확보되고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</li> <li>•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</li> <li>•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</li> <li>•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</li> </ul>	40 30 20 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,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</li> </ul>
③ 교육실적 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축산관련 학교(농고, 전문대학, 대학(원)) 졸업자(또는 수료자)인 경우</li> <li>• 30일이상~</li> <li>• 20일이상~30일미만</li> <li>• 10일이상~20일미만</li> <li>• 5일이상~10일미만</li> <li>• 1일이상~5일미만</li> </ul>	50 45 40 35 30 2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, 축산환경, 질병, 방역,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(이수 수료증 등)</li> <li>*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</li> </ul>
④ HACCP, 컨설팅 여부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HACCP 지정</li> <li>• HACCP 지정 신청</li> <li>•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</li> </ul>	20 10 5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HACCP지정 및 신청은 (사)축산물 HACCP 기준에 한함</li> <li>* 지정서,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</li> </ul>
⑤ 가축공체 가입여부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축공체 가입중인 경우</li> <li>• 미가입</li> </ul>	20 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</li> </ul>
⑥ 수상경력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부(시·군·구, 시·도, 농림수산식품부 등)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, 포상 등을 받은 경우</li> </ul>	중앙부서 30 시 도 25 시군구 20 협회·농협 18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</li> <li>*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, 포상 등은 제외</li> <li>*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</li> </ul>
계(200)				

주) 관련증빙서류 첨부, 미첨부시는 0점 처리

## 〈가점〉 :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(인센티브) 부여

평가항목	세 부 기 준	배점	득점	비 고
자조금 납입율 (7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납입율 100%</li> <li>• 납입율 80%이상 10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60%이상 8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40%이상 6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20%이상 4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10%이상 20%미만</li> <li>• 납입율 10%미만</li> <li>• 납입기준은 '09.6~'09.10월 도계분에 한함</li> </ul>	70 60 50 40 30 20 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(양식 별표 1-4-가) 도계장 및 시·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</li> <li>* 납입율=(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/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)×100%</li> </ul>



## 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

### 1. 목적

-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
-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

### 2. 성과목표 및 지표

-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
  - 현재 특장차량은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기축수송 점유율을 50%까지 확대할 목표임

성과지표	2010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07	'08	'09		
• 가축수송 점유율	5%	-	-	-	2월 중	특장차량수송물량/연간 도축실적
• 계란수송 점유율	5%	-	-	-	2월 중	특장차량수송물량/연간 계란생산실적

\*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,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위생과 자료기준

### 3. 사업대상자

- 지원 대상자 : 농·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, 농가, 계란집하업 등록자

### 4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신청자격 :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·축협, 농가, 계란집하업 등록자
  - 〈우선지원 요건〉
    -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
      -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
    - ② 축산물 공판장(도매시장) 등으로 공동(계통)출하 실적이 많은 농·축협
    - ③ 농가

### 5. 지원대상

- 소, 돼지, 닭(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), 계란을 수송하는 냉장특장차량 구입비

### 6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(냉·난방시설, 급수시설 등) 설치비

### 7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주요 대상 축종 : 소, 돼지, 닭(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), 계란
- 조건 및 금리 : 축발기금, 융자 50%(연리 3%, 2년거치 3년상환), 자부담 50%

### 8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(냉·난방시설, 급수시설 등)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% 융자
- 기존(중고)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,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,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(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)

##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

### 1. 목 적

- 가축분뇨 처리 시설·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환경 보전
- 가축분뇨를 퇴비·액비·에너지로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저감

### 2. 성과목표 및 지표

-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'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

성과지표	2010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07	'08	'09		
• 가축분뇨자원화율(%), 주지표)	86	83	84	85	2011. 2	•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(%)
• 가축분뇨해양배출량(천톤, 부지표)	700	2,019	1,459	1,200	2011. 1	•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(해경)

### 3. 사업대상자

- 개별시설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축산계열사업주체(소·돼지·닭), 농업법인, 지역 농·축협
- 공동자원화시설
  - 퇴·액비화 :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지역 농·축협

### 4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개별시설
  -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, 축산단지, 축산계열사업주체(소·돼지·닭), 농업법인, 농·축협
    - \*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: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
    - \* 공동퇴비장 :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, 퇴비 생산 업체(영농조합법인)
- 공동자원화시설
  - 퇴·액비화 :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·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·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

### 5.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

- 개별시설 : 가축분뇨처리 시설·장비 구입비
  - 퇴비·액비화시설 : 퇴비화 시설(건조식·통풍식·교반식 등), 액비화시설, 퇴비사, 건조장,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, 액비화 전처리시설,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
  - 부대 기계·장비 : 왕겨분쇄기·왕겨팽연화 장비, 분뇨운반탱크(암롤박스), 축분발효기계·장비, 축분이송스크류, 고액분리기, 퇴비·액비살포장비(단, 트랙터, 경운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), 약취제거 장비, 정화방류수 탈색장치, 바うま카, 암롤카, 축분·액비운반차량, 스키드로더, 축분퇴비포장기
  - 공동퇴비장 :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, 후숙·제품보관 창고
    - \* 다음 시설·장비는 개별농가 지원 제외 : 바うま카, 암롤카, 축분·액비운반차량, 스키드로더, 축분퇴비포장기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
- 공동자원화시설



- 퇴·액비화 : 가축분뇨 퇴비·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·장비

## 6. 지원형태(조건) 및 사업 의무량

○재원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)

○지원비율(%)

- 개별시설 : 국비 보조(30%), 지방비(20%), 국비 융자(50%)

- 공동자원화시설(퇴·액비화) : 국비 보조(50%), 지방비(30%), 국비 융자(20%)

※ 융자조건 : 10년(3년거치, 7년균분상환), 연 3%

※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(다면, 공동자원화시설 융자금은 대체 불가)

## 7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사업비 산정기준

- 개별시설,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<sup>2</sup>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·적용

※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(관리사, 창고면적은 제외)

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<sup>2</sup>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

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

⑤ 2004.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%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·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(창고형 건물은 제외)

- 단,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·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

⑥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·장비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(축사 m<sup>2</sup>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) 초과시 축사 m<sup>2</sup>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

(단위 : 천원/m<sup>2</sup>)

축 종	돼 지	한·육우	젖 소	닭	
				평 사	케이지
단 가	74	30	35	21	34

○사업비 지원 한도액(개소당 기준)

(단위 : 백만원/개소)

구 분	돼 지	한 우	젖 소	닭	
				평사	케이지
개별시설	개별농가	400	200	200	
	법인체 등	2,000	800		1,000
* 공동토비장 :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/개소					
공동자원화시설 - 퇴액비화					4,000
	(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100톤 이내는 톤당 3천만원, 100톤 초과는 2천만원 이내 적용)				

※ ① 사업비에 설계비·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

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

○부대 기계·장비의 지원 한도액

- 가축분뇨 퇴·액비처리 장비 : 10백만원 이내(다면,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)

- 가축분뇨 운반·설포용 차량 : 80백만원

-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: 30백만원